



군 산 시



수신 군산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귀중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관련 안내사항(회계감사, 태극기 달기운동, 유권해석) 알림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리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 회계 감사 관련

1) 지속적으로 공지한 외부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현재 (2015.9.22일 기준) 감사완료 및 계약 실적이 56%로 잔여 44% 단지가 아직 까지 계약도 하지 않아, 재차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내 회계감사를 완료 (2015.10.31일 까지 현장 감사완료)하시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할 공인회계사 계약이 어려울 경우,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고, 한국주택관리협회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하면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태극기 달기 운동 : 다가오는 10월은 제67주년 국군의 날(10.1.) 제4347주년 개천절(10.3.) 569돌 한글날(10.9.)을 맞이하는 달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오니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게시물, 안내방송 등)하여 태극기가 모든 세대에 계양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유권해석 변경 : ‘붙임’ 참조
붙 임 태극기 달기 안내방송 문안, 유권해석 공문 각 1부. 끝.

군 산 시



주무관 박경민 공동주택관리 팀장 박상열 건축과장 전결 2015. 9. 22.
이광태
협조자

시행 건축과-41346 (2015. 9. 22.) 접수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www.gunsan.go.kr

전화번호 063-454-3717 팩스번호 063-452-8828 / kkan0223@korea.kr / 대국민 공개

태극기 홍보자료

<구내방송 : 각급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예)
국군의 날 (10. 1.)	9. 30.(수) 오전·오후	- 내일은 제6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 각 가정에서는 모두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10. 1.(목) 아 침	- 오늘은 제6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개천절 (10. 3.)	10. 2.(금) 오전·오후	- 내일은 제4347주년 개천절입니다. - 각 가정에서는 모두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10. 3.(토) 아 침	- 오늘은 제4347주년 개천절입니다. -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한글날 (10. 9.)	10. 8.(목) 오전·오후	- 내일은 569돌 한글날입니다. - 각 가정에서는 모두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10. 9.(금) 아 침	- 오늘은 569돌 한글날입니다. -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 ☞ 더 이상 사용 곤란한 태극기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어 주세요.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유권해석 변경 알림

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광역지자체에서는 관할 기초지자체 및 공동주택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 (기존해석)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제한 시 하한선 외에 상한선 및 일정한 범위로써 제한하는 것도 가능

○ (변경사유) 제한경쟁입찰의 취지가 일정한 자격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으로 한정하여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요건을 상한선이나 일정한 범위로써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일정한 범위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체를 선정할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해석변경) 제한요건의 “하한선”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약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운용.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관리공단(주) 사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한국주택관리협회장

주무관 전성이 시설사무관 전결 2015. 9. 17.
문종진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6492 (2015. 9. 17.) 접수 주택건축과-14468 (2015. 9. 17.)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68 팩스번호 044-201-5684 / jsi1115@molit.go.kr / 대국민 공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